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(안 제4조의1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6. 30. ~ 07. 2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14 중 “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”을 “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”으로 하고 이하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14(고용보험료 지원 대상)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 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한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근로기준 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 로자로 보지 않는다.	제4조의14(고용보험료 지원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한----. <단서 삭제>
1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	<삭 제>
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 로하는 사람	<삭 제>
3.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	<삭 제>
부칙	부칙
<신 설>	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